

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8.10. 1. (규칙 제251호)
개정 2003.10. 9. (규칙 제414호)
개정 2005.12. 5. (규칙 제469호)
개정 2011. 2.11. (규칙 제547호)
개정 2013. 8.26. (규칙 제631호)
개정 2015. 1.30. (규칙 제657호)
개정 2019. 5. 8. (규정 제783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71조에서 규정한 공개강좌 중 한국체육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갖춘 자에게 경영에 관한 기초 이론과 응용기법을 학습케 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제2조의2 (조직) ① 최고경영자과정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주임교수는 본교 교원이 겸임하고, 행정업무는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행한다.

③ 대학원 행정실의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5.8.>

제2조의3(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 ① 본 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최고경영자과정원장,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교학처장,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경영자과정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단, 보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4.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등록금 감면 포함)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모집정원) 본 과정의 모집정원은 7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5.8.>

제4조(개강시기) 본 과정의 개강 시기는 매년 3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5조(지원자격) 본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체육·스포츠분야의 경영관리자 및 지도자
2.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직접적인 영업활동의 목적이 예상되는 업종의 종사자는 지양한다.<신설 2013.8.26>

제6조(전형) 본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

제7조(모집방법) 본 과정의 모집방법은 총장이 정한다.

제8조(수강료) 본 과정에 등록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연한) 본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24~28주로 한다. <개정 2019.5.8.>

제10조(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적한다. <신설 2013.8.26>

1.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3.8.26>
2. 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3.8.26>
3. 본 과정에 재학 중 직접적인 영업활동(보험, 사진, 음식점, 여행사, 유통업 등)을 한 자 <신설 2013.8.26>
4. 본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설 2013.8.26>
5. 교육과정 운영 및 원우회 화합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3.8.26>

제11조(수료) ① 삭제 <2019.5.8.>

② 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시설물의 이용) 본 과정 수강자는 수강기간 중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제251호, 1998. 10.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9년 2월 1일 현재 재학하고 있는 수강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62호, 1999. 2. 26.)

이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4호, 2003. 10.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69호, 2005. 1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7호, 2011. 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1호, 2013. 8.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7호, 2015. 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3호, 2019. 5.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000 호

수 료 증 서

성 명 0 0 0
19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제00기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00월 00일

한국체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원장 000박사 0 0 0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한국체육대학교총장 0 0 0